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

공공기관명	행안부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평가기관	㈜씨에이에스	평가기간	2025.03.31 ~ 2025.05.30	평가예산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평가대상 시스템 개요

시스템명	긴급신고 통합시스템	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	2024.12 ~ 2025.09	
추진개요 및 목적	❍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기술도입을 확산하고 민간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전환을 추진 ❍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 중 ❍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시스템, 긴급신고 바로앱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전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환경구성			
추진 성격	대상여부	법 시행령 제35조의 요건 중 기존 영향평가 받은 후 변경	추진예산	5,878백만원
	추진주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추진유형	□ 신규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
	추진근거	'24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계약서(2024년 12월)		
	신기술 유형	클라우드 보안		
주요 내용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대상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 전환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 기능 구축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영 ❍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서비스 탄력화 기반 마련 ❍ 긴급신고 바로앱 대국민 서비스 안정화와 운영·관리 효율화			
운용체계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			

개인정보파일 개요

파일명	정보주체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목적
긴급신고 바로앱 신고정보	2,680건	[기본정보] (필수) : 이름, 핸드폰번호, 사용언어, 위치정보, 신고내용(첨부파일 있는 경우 해당 첨부파일 포함) (선택) : 생년월일, 성별, 긴급연락처정보(이름, 전화번호, 관계)	경찰, 소방, 해경	긴급신고 대응기관에 신고자 정보 및 신고내용 전달
긴급신고 정보(신고이관,공동대응)	123,938건	[기본정보] (필수) : 연락처(핸드폰번호) (선택) : 이름, 위치정보, 신고내용	-	긴급신고 대응기관에 신고자 정보 및 신고내용 연계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흐름표

○ 개인정보 수집

업무명		수집					
		수집 항목	수집 경로	수집 대상	수집 주기	수집 담당자	수집 근거
긴급신고 통합시스템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긴급신고정보(신고이관·공동대응) 신고내용 연계 수집] (필수) : 연락처(핸드폰번호) (선택) : 이름, 위치정보, 신고내용	온라인	-	수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제5호,제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제54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64조의2
	긴급신고 바로앱	[긴급신고] (필수) : 이름, 핸드폰번호, 사용언어, 위치정보, 신고내용(첨부파일있는 경우 해당 첨부파일 포함) (선택) : 생년월일, 성별, 긴급연락처정보(이름, 전화번호, 관계)	온라인	일반 시민	수시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정보주체의 동의(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제5호,제7호/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개인정보 보유·이용

업무명		보유·이용					
		보유형태	암호화 항목	이용 항목	이용목적	개인정보 취급자	이용방법
긴급신고 통합시스템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DB	위치정보	[긴급신고정보(신고이관·공동대응)] 이름, 연락처(핸드폰번호), 위치정보, 신고내용	긴급신고 대응기관에 신고자 정보 및 신고내용 연계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업무담당자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시스템>해당화면에서 신고내용 정보 조회 및 현황관리
	긴급신고 바로앱	DB	위치정보	[긴급신고 정보 바로앱] 이름, 핸드폰번호, 사용언어, 위치정보, 신고내용(첨부파일있는 경우 해당 첨부파일 포함) 생년월일, 성별, 긴급연락처정보(이름, 전화번호, 관계)	긴급신고 대응기관에 신고자 정보 및 신고내용 전달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업무담당자	긴급신고 바로앱>해당화면에서 바로앱을 통한 긴급신고 정보 조회 및 현황관리

○ 개인정보 제공

업무명		제공						
		제공자	수신자	제공정보	제공방법	제공목적	제공시 암호화	제공근거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해당사항 없음 (개인정보 제공 없음)						
	긴급신고 바로앱	행안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경찰, 소방, 해경	이름, 핸드폰번호, 사용언어, 위치정보, 신고내용, 생년월일, 성별, 긴급연락처정보(이름, 전화번호, 관계)	시스템 연계(실시간)	긴급신고 대응	연계 통신구간 암호화	정보주체의 동의(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 개인정보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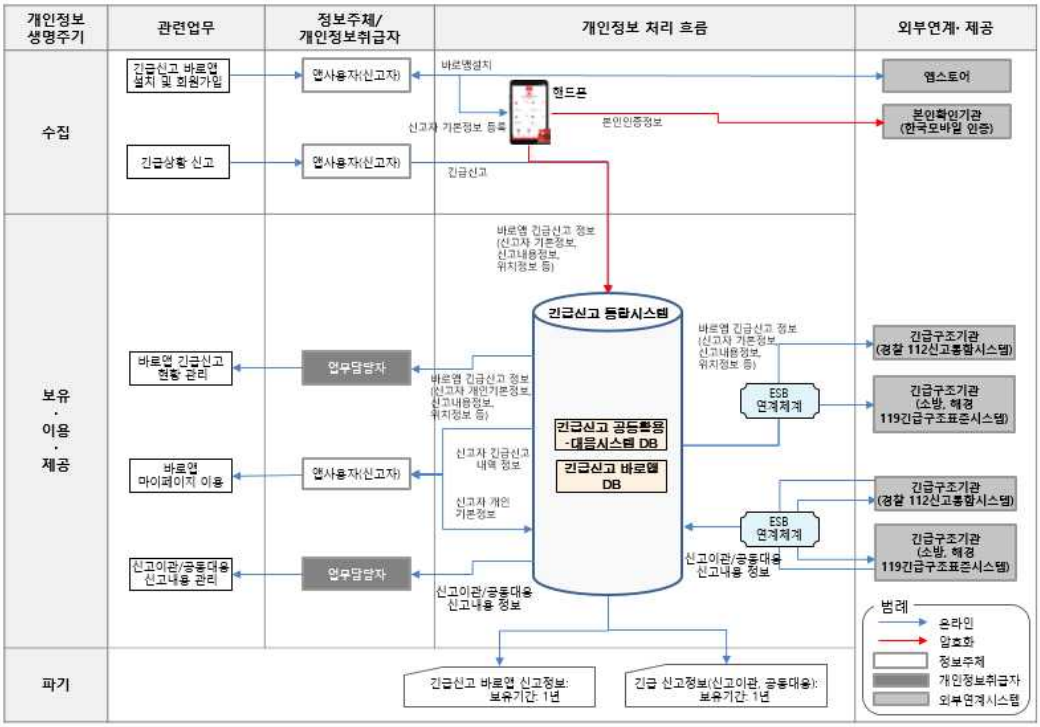
NO	업무명	위탁			
		위탁부서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	관리현황 점검결과
1	신고자 개인기본정보 본인확인	행안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휴대폰 본인확인	미정 (서비스 시점에 확정 예정) AS-IS시스템에서는 한국모바일인증 임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행안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미정 (서비스 시점에 확정 예정)	-
3	클라우드인프라 자원 서비스(CSP)	행안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클라우드인프라 자원 서비스(CSP)	미정 (서비스 시점에 확정 예정)	-

○ 파기

업무명		파기			
		보유기간	파기 담당자	파기 절차	분리보관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1년	시스템 담당자	시스템 구축 후 AS-IS 시스템의 데이터 이관 작업 시에 파기절차에 따라 보유기간(1년) 경과한 신고자료를 DB 상에서 일괄 삭제 조치하고 정기적으로 보유기간 경과한 신고자료 삭제 예정	해당없음
	긴급신고 바로앱	1년	시스템 담당자	시스템 구축 후 AS-IS 시스템의 데이터 이관 작업 시에 파기절차에 따라 보유기간(1년) 경과한 신고자료를 DB 상에서 일괄 삭제 조치하고 정기적으로 보유기간 경과한 신고자료 삭제 예정	해당없음

2.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 개인정보 흐름도 (총괄)



영향평가 기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 점검항목 조정 (107개 평가항목 기준) - 영향평가 안내서 107개 항목 – 제외 28개 항목, 추가 6개 항목 ○ 점검항목 조정 내역

구분	조정 항목번호	조정(추가, 변경 또는 제외) 사유
항목추가	5.8.1~5.8.6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되어 추가
항목변경	없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4.04월 발간)에 따라 최근 개정 법령 모두 수용
항목제외	5.1.1~5.1.6	본 사업 범위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5.2.1~5.2.6	본 사업 범위에서 RFID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5.3.1~5.3.2	본 사업 범위에서 생체인식정보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5.5.1~5.5.9	본 사업 범위에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5.6.1~5.6.4	본 사업 범위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주요 평가기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개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5. 3. 13.]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3. 13.]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시행 2023. 9. 22.]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4. 11.]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25. 4. 11.]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0.31.]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4.04)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2024.04.)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2024.10.)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결과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분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분야에서 일부 미흡함. ❍ 개인정보 처리 및 기술적 보호조치 분석 결과 -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결과 개인정보의 보유, 파기 분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수집, 이용·제공, 위탁 분야에서 일부가 미흡함. - 대상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결과 접근통제,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분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점검에서 일부 미흡함.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 개선계획(2025년 8월) - 정책 개선 1.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3.1.1, 3.1.9, 3.4.1) 2. "긴급신고 바로앱" 의『개인정보 처리방침』개선(3.1.9) 3. "긴급신고 바로앱"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동의' 서식 개선(3.1.6, 3.1.1, 3.1.8, 3.3.1, 3.1.1) 4. 개인정보취급자 등록 및 삭제 절차 마련(4.1.1) 5. 암호키 관리 절차 수립·시행(4.3.3) ❍ 개선계획(2025년 9월) - 시스템 개선 6. "긴급신고 바로앱" 의『개인정보 처리방침』개선(3.1.9) 7. "긴급신고 바로앱"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동의' 서식 개선(3.1.6, 3.1.1, 3.1.8, 3.3.1, 3.1.1) 8. 사용자 세션 타임 아웃 적용(4.1.6)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및 점검(4.4.1, 4.4.2) 10. 개인정보취급자인증 강화(4.1.4) 11.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근 방지 보호 대책 적용(4.1.7)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 법적 근거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과 동의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확인
평가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행정안전부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긴급신고 통합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생명주기(수집, 보유·이용, 제공, 위탁, 파기)별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및 특정 IT기술 활용 시 보호조치 내용을 분석·평가하였음.

	❍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평가 제외('24년 차세대 공공데이터포털 구축 1차 사업(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로 갈음)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결과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분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분야에서 일부 미흡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시스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결과 개인정보의 보유, 파기 분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수집, 이용·제공, 위탁 분야에서 일부가 미흡함. ✓ 수집 : 1. 대상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를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불필요하게 받고 있음. 2. "긴급신고 바로앱"에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하여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지 않음. 3. "긴급신고 바로앱"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항목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처리하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안내가 미흡. 4. 대상시스템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이용·제공 : "긴급신고 바로앱"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으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위탁 :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등의 사항이 정보주체에 공개되고 있지 않음. ❍ 대상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결과 접근통제,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분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점검에서 일부 미흡함. ✓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신청 시 절차 미흡, 개인정보 취급자 세션타임아웃 미 사용, 동일계정 동시 접속 제한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암호키 관리 절차 수립·시행 미 실시 ✓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속기록 항목 일부 누락, 접속기록 점검 기능 미흡 ❍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점검결과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RFID 활용, 생체정보 활용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분야는 대상시스템에서 해당 IT 기술을 활용하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위치정보 활용, 클라우드 보안 분야를 점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함. 도출된 침해요인은 개선계획의 수행 시기와 개선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 또는 규정 및 제도 이행을 통해 조치될 것으로 판단됨 끝.